

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10.22)

1. 검토 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46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문화관광과장 정대환)

가. 제안 이유

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1) 중복 조항 정비

- 위원의 임기 : 제5조제4항 ↔ 제7조

2) 용어의 정비

- 결의 ⇒ 의결
- 문화관광과장 ⇒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
- 문화예술담당주사 ⇒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

다. 관계 법령 : 지방자치법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중복된 내용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
- 위원의 임기규정이 본 조례 제5조4항과 제7조에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4조4항의 임기규정은 삭제하고

- 결의를 의결로,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하고, 문화예술 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자구의 뜻을 바르게 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
-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원안 가결 의견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